

## 8 재정성과 / 평가

###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유사단체 평균
총계	8,992,691	9,306,376	313,686	19,099,429
부채 총계	741,753	910,464	168,711	1,504,782
비용 총계	3,133,895	3,468,312	334,418	6,121,284
수익 총계	3,369,751	3,667,093	297,342	6,728,17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8-1] 2015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세요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 재무제표 항목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단체 평균
I.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8%	5.73%	4.57%
	2. 실질수지비율	15.34%	15.42%	12.05%
	3. 경상수지비율	65.54%	68.34%	73.96%
	4. 관리채무비율	15.13%	10.98%	13.33%
	5. 실질채무비율(광역)	10.19%	9.98%	9.61%
	6. 현금자산대비부채비율	92.88%	59.73%	71.05%
	7. 통합유동부채비율	37.00%	27.97%	31.91%
	8. 공기업부채비율	393.90%	65.07%	263.12%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62%	1.85%	1.61%
	10. 자체세입비율	22.11%	29.59%	24.63%
II. 효율성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4.81%	4.33%	5.13%
	11. 지방세징수율	98.20%	97.22%	98.46%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9	0.9992	1.0008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77%	1.99%	0.80%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9.94%	29.40%	29.65%
	13. 경상세외수입비율	0.35%	1.83%	0.51%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3.46%	5.70%	2.80%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4%	1.33%	0.12%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69%	7.79%	15.92%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0	1.0010	1.0000
	16. 지방보조금비율	1.60%	7.86%	3.48%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8.92%	0.29%	2.81%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73%	2.65%	1.70%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4.79%	19.34%	54.07%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14%	5.08%	4.77%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8.84%	4.05%	-4.43%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003	0.0157	0.1231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233	0.0827	-0.0239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501	0.1900	0.1045	
22. 행사축제경비비율	0.05%	0.44%	0.16%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76.43%	6.28%	-9.85%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8.62%	-7.16%	-4.69%	
III.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7. 재정공시노력도			
	28. 재정분석대응도			

◆ 재정분석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재정의 준법 운영, 재정공시노력을 위한 재정책임성 지표를 개발하여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 재정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재정건전성 분야는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관리, 공기업 관점 등 3가지 관점에서 총 9개의 지표에 의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함

- 재정수지 관점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4회계연도에 비해 측정결과가 많이 높아졌으며, 실질수지비율은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아 우수하고 경상수지비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동종단체 중 5년 연속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채무관리 관점에서 지표값은 평균수준이나 2014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지표값이 떨어졌으며, 공기업 관점 지표의 경우 부채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하향되어 부채관리 노력이 필요함.

◆ 재정효율성 분야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지표별 비율과 증감률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음)에 의해 세입관리 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함

- 세입관리 관점으로 자체세입비율은 2014회계연도에 비해 상향되었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도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체납액 증가율이 2014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동종단체보다 높은 편임.

- 세출관리 관점에서는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등 지표결과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일부 상향되어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작년보다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미흡한 편임.

◆ 책임성 분야는 총 5개의 지표로 1개의 인센티브 지표와 4개의 페널티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우리도는 유일한 인센티브 지표인 재정공시노력도가 우수하여 인센티브를 받았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8-2-1\]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별첨 8-2-1\]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별첨 8-2-2\]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통계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표명	산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역 /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액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정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 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증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 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액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 / 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 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전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자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예관한법률, 사회보장 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 결산액 3년(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범용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 8-4.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충청북도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 감면액 (A)	289,790	273,961	269,127	197,911	159,567
· 비과세	43,893	47,463	26,706	41,784	36,406
· 감면	245,897	226,498	242,422	156,127	123,161
지방세 징수액 (B)	684,602	728,437	696,183	854,664	967,948
비과세·감면율 (A/A+B)	29.74%	27.33%	27.88%	18.80%	14.15%

####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197,911	100.00%	159,567	100.00%	△38,344	△19.37%
일반공공행정	11,538	5.83%	12,673	7.94%	1,135	9.84%
공공질서 및 안전	81	0.04%	58	0.04%	△22	△27.75%
교육	6,986	3.53%	3,045	1.91%	△3,941	△56.41%
문화 및 관광	5,722	2.89%	2,262	1.42%	△3,460	△60.47%
환경보호	223	0.11%	1,485	0.93%	1,262	564.90%
사회복지	19,342	9.77%	15,224	9.54%	△4,118	△21.29%
보건	734	0.37%	3,475	2.18%	2,741	373.14%
농림해양수산	14,330	7.24%	12,711	7.97%	△1,619	△11.30%
산업·중소기업	30,679	15.50%	31,246	19.58%	567	1.85%
수송 및 교통	8,466	4.28%	7,641	4.79%	△825	△9.74%
국토 및 지역개발	66,099	33.40%	38,917	24.39%	△27,182	△41.1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9,371	9.79%	9,725	6.09%	△9,646	△49.8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4,340	7.25%	21,104	13.23%	6,764	47.17%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b>합 계</b>	159,567	36,406	119,627	3,086	448	-	
통 세	소 계	157,740	33,476	117,730	3,086	448	-
	취득세	146,180	33,280	109,367	3,085	448	-
	등록면허세	8,560	196	8,363	1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	-	-	-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 적 세	소 계	4,827	2,930	1,897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4,827	2,930	1,897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4,330	53,878	99.17
여성정책추진사업	16,926	16,900	98.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597	28,220	98.68
자치단체 특화사업	8,807	8,758	99.44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8-5] 성인지 결산현황을 참조하세요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5년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집행액 5천만원 미만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당해연도('15)	145	22,522,449	17,102,446	27	20,544,879	15,209,232	118	1,977,570	1,893,215
전년도('14)	177	21,201,205	16,779,477	30	18,784,266	14,407,431	147	2,416,938	2,372,046
증감	△32	1,321,244	322,969	△3	1,760,613	801,800	△29	△439,368	△478,83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참조하세요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우리도 해당없음

### 8-8.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충청북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73	234,252	222	6,492	15.07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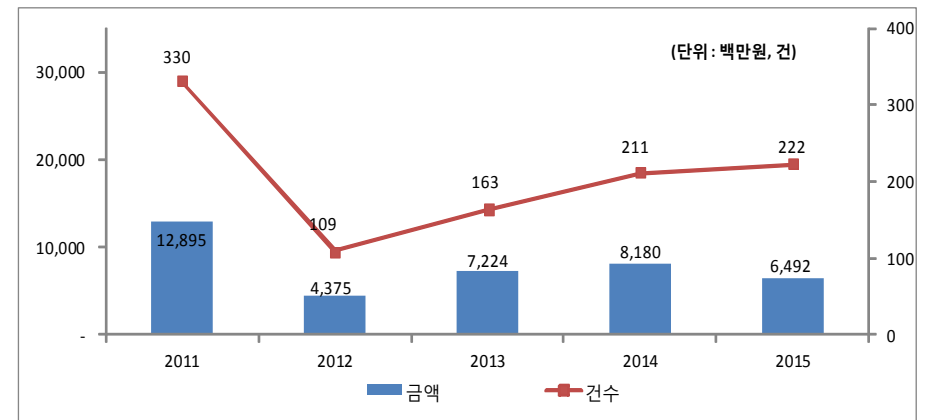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적	건수	330	109	163	211	222
	금액	12,895	4,375	7,224	8,180	6,49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단체명(A)	시설유형(B)	시설구분(C)	시설명(D)	건립일(E)	운영방식(F)	건물면적(㎡)(G)	토지면적(㎡)(H)	관리인력(I)	연간이용인원(J)	건립비용(K)	운영비용(L)	순수익(M)	순수익(N)
북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충북미래관	2009-08-24	위탁	12,587	2,692	22	98,644	40,310	2,155	1,304	△85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참조하세요  
(<http://www.cb21.net/finance/contents.do?key=3028>)

###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2155과(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중	
3	3	-		3	-	2	1	-	-	-	-

###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관할 11개 시군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66,288백만원입니다(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 ■ 충청북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5년 결산기준)

##### ❖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지수 산정액(C)	산정액(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F=D+E)	비교	
							2014 년도	원안·화천 지역지원 시설세
계	133,114	79,869	53,245	266,228	0	266,228	222,581	2,185
청주시	69,408	42,611	3,131	115,150	-	115,150	108,459	353
충주시	17,455	9,004	4,474	30,933	-	30,933	28,302	1,205
제천시	11,333	5,468	5,210	22,011	-	22,011	17,562	111
보은군	2,859	1,346	5,428	9,633	-	9,633	6,002	5
옥천군	4,380	1,909	5,348	11,637	-	11,637	8,226	4
영동군	4,219	1,491	5,701	11,411	-	11,411	7,250	3
충령군	3,069	1,649	4,796	9,514	-	9,514	5,883	10
진천군	5,996	5,447	3,899	15,342	-	15,342	11,590	12
괴산군	3,251	1,625	5,545	10,421	-	10,421	7,027	30
음성군	8,591	8,088	4,326	21,005	-	21,005	16,440	28
단양군	2,553	1,231	5,387	9,171	-	9,171	5,840	424

❖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 해당없음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기타 (도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 (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1,912	515,354	-2,772	46,847	227,397	788,740		295,646		266,228
청주시	428	270,448	231	23,754	118,569	413,430	47%	194,311	90%	175,025
충주시	813	57,611	-1,980	5,145	29,817	91,457	27%	24,693	90%	22,224
제천시	208	34,362	124	3,317	19,361	57,373	27%	15,491	90%	13,942
보은군	8	8,508	138	726	4,883	14,263	27%	3,851	90%	3,466
옥천군	4	11,539	72	1,091	7,483	20,189	27%	5,451	90%	4,906
영동군	4	9,489	46	707	7,208	17,455	27%	4,713	90%	4,242
증평군	6	10,855	4	795	5,243	16,902	27%	4,564	90%	4,108
진천군	12	38,187	40	4,126	10,242	52,528	27%	14,183	90%	12,765
괴산군	36	10,613	100	891	5,554	17,195	27%	4,643	90%	4,179
음성군	21	56,903	-1,582	5,573	14,676	75,620	27%	20,417	90%	18,375
단양군	372	6,839	35	722	4,361	12,328	27%	3,329	90%	2,996

## 8-12. 지방세 징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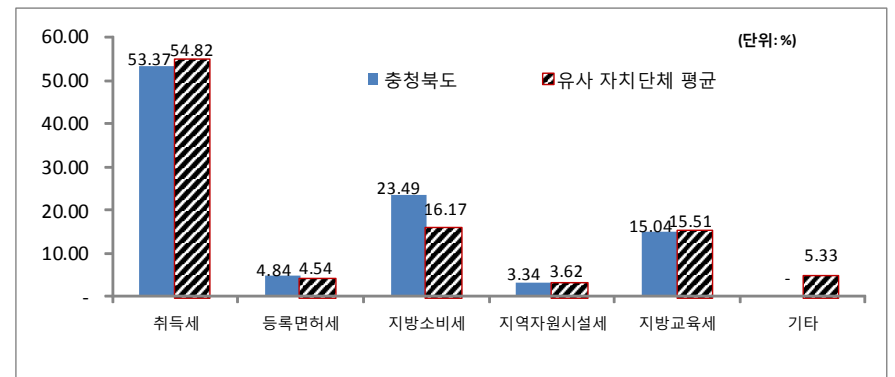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967,94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728,437	696,183	854,664	967,948	100	9.94
취득세	400,317	365,037	424,901	516,621	53.37	8.87
등록면허세	33,737	33,924	39,179	46,848	4.84	11.57
주민세	-	-	-	-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	-	-	-	-	-
레저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131,557	136,782	216,836	227,397	23.49	20.01
지방소득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25,644	26,908	30,721	32,314	3.34	8.01
지방교육세	132,099	129,463	139,042	145,556	15.04	3.29
지난년도수입	5,083	4,069	3,985	-787	-0.08	-11.46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2015) 금액 / 최초연도(ex:2012) 금액 ) ^ (1/3) - 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전국 총 지방소비세의 3.79%로 낮음에도, 취득세 및 타목의 비중이 유사 자치단체 평균 보다 낮아 지방소비세 징수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표시됨

###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7,790	16,078	18,254	65.69	113.53

### 8-14. 감사결과

■ 우리 충청북도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성과감사(자체감사)를 받은 재정부야 감사결과입니다.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종합감사 (혁신도시 관리본부)	'15.3.23.	관리 및 사용료 지원 부적정(회수 13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경제자유구역청)	'15.6.9.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감액 53,819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청남대관리사업소)	'15.6.15.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 부적정 (회수 1,760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도로과)	'15.6.15.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감액 1,329,969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치수방재과)	'15.6.1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감액 197,971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도로관리사업소)	'15.6.15.	진천 양백도로 및 증평 남하도로 선형개량공사 설계부적정(감액 20,527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도로관리사업소)	'15.6.15.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설계부적정 (감액 1,246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도로관리사업소)	'15.6.15.	매산교외 5개교 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회수 350천원)	시정	처분완료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특정감사 (도로관리사업소)	'15.6.15.	공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설계 부적정 (감액 105,647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도로관리사업소)	'15.6.15.	보은 구티사거리 및 봉계2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회수 7,224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산림환경연구소)	'15.6.15.	2014 사방사업(사방댐, 사후관리) 설계 부적정(회수 2,384천원)	시정	처분완료
특정감사 (산림환경연구소)	'15.6.15.	2015사방사업 및 사방댐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정 부적정(회수 85,284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청남대관리사업소)	'15.6.15.	청남대 대통령길 보수공사 추진 부적정(회수 6,92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산림환경연구소)	'15.6.15.	기술정보수당 및 대민활동비 지급 부적정(회수 2,37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산림환경연구소)	'15.6.15.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회수 13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도로관리사업소)	'15.12.31.	대민활동비 지급 부적정 (회수 500천원)	시정	처분완료
종합감사 (도로관리사업소)	'15.12.31.	보은 회남 은운도로 정비공사 설계 부적정(감액 7,382천원)	시정	처분완료

###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2015회계연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예산집행률제고	예산조기집행률 우수	증액 100백만원
증액	예산효율화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증액 200백만원
증액	재정공시	지방재정공시 우수	증액 20백만원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